

<p>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p> <p>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議長 白昌鉉 趙石萬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會計關係公務員財政保證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巨型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94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이상 7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부칙 제1항중 “1994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부칙 제2항중 “취득하였거나,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을“ 이미 취득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는”으로 수정한다.</p> <p>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의 시행에”를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으로 한다.</p> <p>제2조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p> <p>제3조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중 “제96조”를 “제123조”로 한다.</p> <p>제3조제1항제1호중 “지하철건설본부”다음에 “청소사업본부”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중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시의회사무처 : 사무처장</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p>	<p>.....</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예)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p> <p>.....</p> <p>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단서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를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로, “양도하거나”를 “양도(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p>

<p>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로 한다.</p> <p>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p> <hr/> <p>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제8호중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p> <p>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5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p> <p>제22조를 삭제한다.</p> <p>제27조제2항중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한다.</p> <p>제8절의 제목 “마권세”를 “경주·마권세”로 한다.</p> <p>제49조제1항중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을 “납세의무자는 경주종료일”로 하고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마사회에”를 “납세의무자에게”로 한다.</p> <p>제50조본문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경마”를 각각 “경주”로 하며,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p>	<p>및 그 금액</p> <p>2.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마권세액</p> <p>3.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경주투표 적중수</p> <p>4.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p> <p>제51조본문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p> <p>2.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경주투표 적중수</p> <p>3.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 그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p> <p>제52조중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마권세액”을 “경주·마권세액”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hr/> <p>서울특별시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p>
---	---